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

두 당사자는 다음 각 사항을 안내받았으며 이견이 없음에 동의합니다.

- 1. 두 당사자는 법률적 혼인관계가 아니지만, 1년 이상 혼인 의사가 존재하여 신청일 현재 동거 등 상호 합의 하에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
- 2. 두 당사자가 만약 사실상 혼인관계가 아님에도 보조생식술(인공수정 및 체외수정)의 건강보험 적용 및 정부지원 보조를 받기 위해 허위로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한 경우, 관련비용의 환수는 물론 형법 등 관계법에 따라 처벌 등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3.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'을 신청하여 결정통지된 '사실상 혼인관계'는 보조생식 술(인공수정 및 체외수정)의 건강보험 적용 및 정부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, 그 외에 다른 법적 효력을 없음을 인지하였습니다.

20 . . .

※ 반드시 당사자 각각 <mark>자필 서명 또는 날인</mark>하시기 바랍니 다.

임의 작성 시 신청 반려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.

당사자1: (인) 연락처:

생년월일 :

주소 :

당사자2: (인) 연락처:

생년월일 :

주소 :

만안구보건소장 귀하

사실혼 확인보증서

연락처 :

당사자1:

생년월일 : 주소 :					
당사자2 : 생년월일 : 주소 :	연락처 :				
까지 1년 이상의 부부공동생 수 있으며, 보증일 이후에 해 따라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	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해당 사 당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된 경우	보증인이 관계법령에			
	20				
다.	가가 <mark>자필 서명 또는 날인</mark> 청 반려되오니 반드시 확인	•			
보증인1: 생년월일: 주소:	(인)(당사자(1, 2)와의 관계: 연락처:)			
보증인2: 생년월일: 주소:	(인) (당사자(1, 2)와의 관계 : 연락처 :)			
		한구보건소장 귀하			
※ 추가 제출 서류 :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					
(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)					